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2호 2017. 8. 11(금)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1122호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안) ----- 1
- 남원시 공고 제2017-1126호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3
- 남원시 공고 제2017-1129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4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17 - 1122호

공 고 (안)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8. 11.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 간
- 2.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적 (m ²)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변**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6	남원	수지	남창	산57	임	65,687	9,922

- 3. 목 적 : 개 전
- 4. 사업예정기간 : 2017. 08. . ~ 2018. 08. 30.
- 5. 열 략 장 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업시설) (☎ 063-620-639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2.25>

고시 제2017-99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남 원 시 장 [인]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점	종점			
인월면	농어촌 도로 (리도)	중군선	202	인월면 서부리1 63-2	인월면 인월리 62	3.0	-	노선 지정 (변경)
인월면	농어촌 도로 (리도)	취인선	210	인월면 취암리 484-2	인월면 취암리 538	1.4	-	노선 지정 (변경)

주 : 1. 기점, 종점란에는 지번을 기입

21305-00511일

92.4.6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남원시 공고 제2017 - 1126호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조례에 관한 법률」 개정('16.12.2)에 따른 위임조항 신설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도시림.생활림 정의 신설(안 제3조)
- 도시림등의 관리 계획수립.시행 계획 신설(안 제4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 063-620-6447)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8.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1.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도시림·생활림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계획 신설(안 제4조)

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17. 8. 10 . ~ 8. 29.(20일간)

- 결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 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유지관리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림·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9.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 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 등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킬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가로수 조성

제5조의 제목“(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을“(수종의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남원시”를“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제1호의 규정”을“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 후단 중“조정할 수 있다.”를“조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군·혼식 할 수 있다.”를“군·혼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단서 중“식재 할 수 있다.”를 각각“식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식재하여야 한다.”를“식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식재 할 수 있다.”를 각각“식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결정하여야 한다.”를“결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법 제21조제2항”으로,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를“유관기관 또는 담당부서에에서는”로, “반드시 협의하여야”를“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을“제1항에 따른 조성협의를 할”로, “관련”을“관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을“관계 법령, 조성관리계획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각 호의 어느 하나와”를“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인하여 생육”을“생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제1항의 규정”을“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제19조의 규정에 의해”를“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자가”를“사람이”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처리한다.”를“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를“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방제로, “실시할 수 있다.”를“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의한”을“따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방제할 수 있다.”를 “방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로 한다.

제1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된다”를 “됨”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토하여야 한다.”를 “환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하여 가로수”를 “가로수”로,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식재,”를 “식재나”로, “변경 등에 의해”를 “변경에 따라”로,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유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눈더미가”를 “눈더미는”으로,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적재금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1의 규정”을 “별표 1”로, “「산림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을 “「산림조합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을 “「산림조합법」 제108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때”를 “경우”로, “언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련 법령, 조례”를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해로 인하여”를 “위험한 재해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제공한자”를 “제공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6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있으며”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법령에 의해”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하여 인위적”을 “인위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법령에 의한”을 “관계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의 규정”을 “제20조”로, “이를 납부”를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3항 중 “납부하여야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만들어”를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

다. 기타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 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나.----- 「도로법」 제10조-----

다. 그 밖에 -----

2. ----이런 -----

-----.

3. ----이런 -----

-----.

4. -----란 -----

-----.

5. -----이런 -----

-----.

6.-----란 -----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 수립 시

-----.

7. -----란 -----

-----.

8.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을 제외한다.

9. "생활림"이란 마을 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2. 가로수 현황 분석
-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
- 중
-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 5. 가로수 병·해충 방지에 대한 대책
-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제 2 장 가로수 조성

<신 설>

<신 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②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도시림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 4.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립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립 등의 업무담당 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립 등의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킬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가로수 조성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남원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제5조(수종의 선정기준) -----
----- 도시림 등의 조성
· 관리계획-----
-----.

1. 시-----

2. ~ 4. (생략)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6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시설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3. (생략)

제8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와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6미터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6조(식재위치)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

3. (현행과 같음)

제8조(식재 기준) -----

-----.

1. -----

가. -----

-----.

----- 조정

나. -----

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하여야 한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 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5.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 군·혼식

다. -----

- 식재

라. -----

----- 식재

2. -----

---- 식재

3. -----

---- 식재

4. -----

----- 식재

5. -----

경우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0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 내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가로수 관리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생략)

----- 결정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
----- 유관기관 또는 담당부서에서는-----
----- 협의하여야 ----
-.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협의를 할 -----
----- 관계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관계 법령,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

<삭 제>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

----- 각 호와 --.

- 1. (현행과 같음)

2. 토양 등으로 인하여 생육이 불량하
거나, 구간 배열이 불규칙한 가로수

3. ~ 6.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또는 보
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 조사를 실시
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
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
는 식재시기에 식재 할 수 있다.

제12조(가지치기) ① (생 략)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
간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13조(병충해의 방제) 시장은 돌발
해충의 적기 방제 및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갱신·
보식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
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
지와 낙엽을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2. ----- 생육-----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제12조(가지치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9조에 따라
-----.

③ ----- 사
람이 -----

-----.

제13조(병충해의 방제) -----

-----.

1. -----

-----.

처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5.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처리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방제-----

- 실시

3. ----- 따른 -----

-- 사용

4. -----

----- 방제

5. -----

----- 실시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

1. -----

----- 됨. -

----- 예외로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

한 경우

2. 가로수 조성 계획 예정지 또는 기존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 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존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재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생 략)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공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

----- 환토

3. -----

----- 가로수 -----

----- 시비

4. ----- 식재나 -----
----- 변경에 따라 -----

----- 이상 유지

5. -----
----- 눈더미는 -----
----- 적재금지

제16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

-----.

제18조(시민참여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④ (생략)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는 「산림조합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

제18조(시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 ① -----

----- 별표 1-----

----- 「산림조합법」 제46조-----

-----.

② ----- 제14조에 따라 -----

----- 경우-----

----- 「산림조합법」 제108조-----

-----.

제20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

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산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시행한다.

----- 경우 -----
----- 받아야 -----

-----.

② ----- 따른 -----

-----.

③ -----
-- 날 -----
----- 관계 -----
법령 -----

④ -----
----- 위험한 재 -----
해로 -----
-----.

⑤ 제1항에 따라 -----
----- 드는 ----- 제 -----
공한 자 -----

-----.

⑥ 제1항에 따른 -----

-----.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그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해 부담금 징수나 처벌을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하여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훼손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1.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 2. 3. (생략)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

⑦ 제6항-----

있으며, -----

제21조(신고 등) ① -----

----- 관계법령에
따라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인위적 -----

② -----
----- 경우에는 -----

-----.

- 1. ----- 관계 법령에 따
른 -----
- 2. 3. (현행과 같음)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 제20조-----
-----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 .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
- 납부하여야 할 자가 -----

----- .

제23조(자료유지) -----

-----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
-- . <후단 삭제>

제24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남원시 도시림 및 가로수를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보완, 사후관리한다..

○ 관련조문

- 남원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9조~제16조)(조성협의등,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의 방제, 외과수술 등, 지형과 토양보호)
- 남원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25조)(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2,213백만원

- 인건비 : 282백만원
- 시설비(수목식재 등) : 1,818백만원
-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21백만원
- 재료비 : 92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7년 : 2,213백만원
- 2018년 : 2,213백만원
- 2019년 : 2,213백만원
- 2020년 : 2,213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2017년 : 2,213백만원 (지특 500 시비 1,713백만원)
- 2018년 이후 : 2,213백만원 (지특 500 시비 1,713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 가로수 및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이 강하며 지자체 공통적인 사업으로 산림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도시림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사업효과가 높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0
자체수입(이용료)						0
기타수입						0
세 출	2,213	2,213	2,213	2,213	2,213	11,065
시설비	1,818	1,818	1,818	1,818	1,818	9,090
인 건 비	282	282	282	282	282	1,410
일반운영비	21	21	21	21	21	105
기 타	92	92	92	92	92	460
재원 조달						0
의존 재원	소 계	2,213	2,213	2,213	2,213	11,065
	국비	500	500	500	500	2,500
	도비					0
	시비	1,713	1,713	1,713	1,713	8,565
자체 수입	소 계					0
	지방세					
	세외수입					
	이용료수입					0
	기타수입					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산 립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시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가로수관리위원회 삭제 (안 제4조)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7. 8. 10. ~ 8. 29.(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에서 규정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병충”을 “병충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한다.

제3조 중 “제8조제5항과 관련한”을 “제8조제5호에 따른”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를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서식1”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2조에서 규정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7조 중 “제16조에서 규정한 가로수관리시설물”을 “제16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 시설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비용부담) 조례 제20조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가로수 훼손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기록·관리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세부사항에 대하여는”을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별지 제1, 2, 3, 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제5조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 . .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 로 수 위 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p>남원시 가로수조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남 원 시 장 귀 하</p>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p>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붙임 가능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에서 규정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병충”을 “병충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한다.

제3조 중 “제8조제5항과 관련한”을 “제8조제5호에 따른”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를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서식1”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2조에서 규정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7조 중 “제16조에서 규정한 가로수관리시설물”을 “제16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 시설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비용부담) 조례 제20조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가로수 훼손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기록·관리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세부사항에 대하여는”을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별지 제1, 2, 3, 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제5조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 . .
	주 소			연락처	
사업대상	가 로 수 치 가 위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남원시 가로수조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붙임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제9조 관련)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 부담금	비고 (차량번호등)	
		성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 상태	훼손인					
									성명	주소				

[별지 제4호 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10조 관련)

도 로 노선명		구 간 시 : 종 :				도로종류					
좌우측		연장		도로폭 차도:		좌측 보도 : 우측 보도 :					
최초 조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준공 일자	사업비		천원	시공사		
수 종	식재 본수 (본)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유형	보호틀 유형
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가로수 구비 조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 략)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생 략) <p>제3조(식재기준) 조례 제8조제5항과 관련한 가로수 식재 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제4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가로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p>	<p><u>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가로수 구비 조건) -- 제5조에 따른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병충해----- 5. ----- <u>쉽도</u> <u>록</u> ----- ----- ----- 6. (현행과 같음) <p>제3조(식재기준) -- 제8조제5호에 따른 ----- -- <u>별표 1</u>-----.</p> <p><삭 제></p>

같다.

1.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가로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1.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흘릴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승인신청)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1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지치기 방법)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가지치기 방법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가로수관리시설물의 설치)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한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비용부담)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9조(훼손자 신고) 조례 제21조 제2항과 관련한 전화신고의 경우에는 별지서식2의 접수대장에, 신고서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서식3의 신고서에 기록·관

제5조(승인신청) ---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

별지 제1호 서식-----
-----.

제6조(가지치기 방법) --- 제12조에 따른 -----

----- 별표 4-----
-----.

제7조(가로수관리시설물의 설치) -- 제16조에 따른 가로수관리시설물 -----
-----.

제8조(비용부담) 조례 제20조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훼손자 신고)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가로수 훼손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

리한다.

제10조(가로수 관리대장) 조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관리 대장은 별지서식 4에 의하여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서에 기록 · 관리한다.

제10조(가로수 관리대장) 조례 제 23조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

----- 세부사항은 -----

-----.

남원시 공고 제2017 - 1129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근무시간 외의 근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의 근거 조항 신설
-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의 경우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

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신설 (안 제8조제4항)

다. 특별휴가규정을 일과 가정의 양립 취지에 따라 개정 (안 제23조)

- 경조사 휴가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수를 조정
- 육아시간 부여 대상 공무원의 ‘여성’제한을 삭제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시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word99@korea.kr), 전화(063-620-6063),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h2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2>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2017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40px;">의견서 제출인 주 소 :</p> <p style="margin-left: 100px;">성 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100px;">전 화 :</p> <p style="margin-top: 20px;">남원시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8.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근무시간 외의 근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의 근거 조항 신설
 -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의 경우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
- 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신설 (안 제8조제4항)
- 다. 특별휴가규정을 일과 가정의 양립 취지에 따라 개정 (안 제23조)
 - 경조사 휴가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수를 조정
 - 육아시간 부여 대상 공무원의 ‘여성’제한을 삭제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시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 ~ 2017. 8.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공무원은 본인인”을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로,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를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u>3</u>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 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③ (생략)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⑬ (생략)

<신 설>

<신 설>

④ 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 주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
무원-----.

⑤ ~ ⑬ (현행과 같음)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 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